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기연가산세의 면제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에 적용될 이자율이 각각 ‘월 1만분의 66’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별지서식,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20. ~ 1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29호서식, 제30호서식,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3mm

 음성현행(외부)

보내는 사람

바코드 17mm

 우편반송용

받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3%)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나갈 때마다(최대 60개월)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 × 0.0066 × 경과월수)

납 기 내 세 액 산출내역

바코드 13mm
음성현행(내부)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관련법령
① 합 계				
② 가산된 세액				
③ 차감(공제·감면 등)된 세액				
납기 내 세액(① + ② - ③)				

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세목의 납기 내 세액에 포함합니다).

세목	구분	대상금액	세율	감면액	가산된 세액	관련법령
합 계						

오 사균구 (수납행정)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일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호

납기 내 :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 까지

납부할 금액	
--------	--

수납은행명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수납용

오 사균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결
------	------	---------	----	----	---	----	-----	------	---

납 세 자 주 소 납세지번호:

지 방 세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
납부할 금액		

수납은행명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담당자: 문의처:

전자납부 번호

안 내 말 씀

1. 2024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세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5.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농어촌특별세가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양쪽의 공란의 농어촌특별세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② 농어촌특별세액이 없거나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앞쪽을 표기된 납기 후 금액 및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

[illegible]

-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6.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7.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 ARS · ATM과 지방세정보통신망(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지방세납부 등] 선택(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나 인터넷지료(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07:00 ~ 23:30)

지방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환불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우체국

비코드 13mm

음성변환용(외부)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비코드 17mm

우편반송용

과 세 근 거

납 부 근 거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3%)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 × 0.0066 × 경과월수)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아래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 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체신관서) 또는 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 자동이체(납부)일은 년 월 일입니다.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군.구

납세고지서 (분)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음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주 소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담당자

문의처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납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210mm×297mm(CP지 90g/㎡)

- 5 -

(뒤 쪽)

자동납부에 대한 안내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자동납부는 불가합니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CP지 90g/㎡)

- 6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mm

우편반송용

납기 내 세액 산출내역

바코드 13mm

음성화환(외부)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관련법령
① 합 계				
② 가산된 세액				
③ 차감(공제·감면 등)된 세액				
납기 내 세액(① + ② - ③)				

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세목의 납기 내 세액에 포함합니다).

세목	구분	대상금액	세율	감면액	가산된 세액	관련법령
합 계						

차감된 지방세 환급금 총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	환급금 총당액	세목	환급금 총당액

사군구 _____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일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_____

납기 내 : _____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 _____ **까지**

납부할 금액 _____

수납은행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사군구 _____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음면동	과세번호	검

납세자 자
주 소

지방세

과세대상 _____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	납기 내
			까지
납부한 금액			

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

담당자: _____ **문의처:** _____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인

전자납부 번 호

안 내 말 씀

1. 2024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6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4.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5.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농어촌특별세가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납부기한 후 납부일지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세금의 공란의 농어촌특별세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② 농어촌특별세액이 없거나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앞쪽에 표기된 납기 후 금액 및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

[illegible]

- ◎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6.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현금급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7.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지방세정보통신망(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웹)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지방세납부 등] 선택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07:00 ~ 23:30)

지방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과세번호		바코드 17mm 우편반송용																																																																							
담당자	문의처																																																																								
과 세 근 거		바코드 13mm 음성반환용(약부)																																																																							
남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3%)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 × 0.0066 × 경과월수)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사균구 _____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_____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20%;">기관번호</th> <th style="width: 80%;">세목</th> </tr> <tr> <td> </td> <td> </td> </tr> <tr> <td>납세연월일</td> <td>과세번호</td> </tr> <tr> <td> </td> <td> </td> </tr> </table> 전자납부번호 _____ 납기 후: _____ 까지 납부할 금액 _____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일	과세번호			사균구 _____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납세자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과세기관</th> <th style="width: 10%;">검 회계</th> <th style="width: 10%;">과목</th> <th style="width: 10%;">세목</th> <th style="width: 10%;">연도</th> <th style="width: 10%;">월</th>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읍면동</th> <th style="width: 10%;">과세번호</th> <th style="width: 10%;">검</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납세자 주소: _____ 납세자번호: _____ 과세대상: _____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세 목</th> <th style="width: 20%;">납기 내 세액</th> <th style="width: 20%;">납기 후 세액</th> <th style="width: 20%;">부과내역(과세표준)</th> <th style="width: 20%;">세율</th> <th style="width: 20%;">납기 내</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까지</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 <td colspan="4">납부할 금액</td> <td> </td> <td>납기 후</td> </tr> <tr> <td colspan="4"> </td> <td> </td> <td>까지</td> </tr> </tbody> </table> 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차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십시오. 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_____ 문의처: _____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자납부번호 _____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까지																			납부할 금액					납기 후						까지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일	과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까지																																																																				
납부할 금액					납기 후																																																																				
					까지																																																																				

안 내 말 씀

1. 2024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세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농어촌특별세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5.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농어촌특별세가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납부기한 후 납부일차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앞쪽의 공란의 농어촌특별세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농어촌특별세액이 없거나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앞쪽에 표기된 납기 후 금액 및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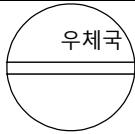
[illegible]

-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6.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7.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 ARS · ATM과 지방세정보통신망(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지방세납부 등] 선택(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나 인터넷지료(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07:00 ~ 23:30)

지방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환불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3mm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우편반송용

받는 사람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액의 3%)가 가산되고, 채납된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납부지연
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
세액 × 0.0066 × 경과월수)


음성변환용(내부)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지방세 환급금 총당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세목	부과세액	환급금공제액	총당세목	환급금 총당액

사.군.구 _____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 목
납세연월일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 _____ 까지
 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 _____ 까지
 납부할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	---------------

사.군.구 _____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세자번호: _____

지 방 세

과세대상: _____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납부할 금액					

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담당자: _____ 문의처: _____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안 내 말 씀

1. 2024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세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세외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등)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5.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농어촌특별세가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앞쪽의 공란의 농어촌특별세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② 농어촌특별세액이 없거나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앞쪽에 표기된 납기 후 금액 및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

[illegible]

-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6.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7.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 ARS · ATM과 지방세정보통신망(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지방세납부 등] 선택(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나 인터넷지료(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07:00 ~ 23:30)

지방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환불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음성반환용(외부)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음성반환용(내부)

근 거 법 률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안 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소세구 독촉장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납부기한: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번호

세 목	납부할 세액
납부할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납용

직인

소세구

독촉장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음면동	과세번호	검
------	------	---	----	----	----	----	---	----	-----	------	---

납세자 주소

납세자번호:

지 방 세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계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까지

담당자 문의처

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

전자납부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안 내 말 씀

1. 2024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표: 귀하께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정수법」 제3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알려드리며,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기정수법」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표: 귀하께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정수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된 금액을 알려드리며,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기정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4. 독촉장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농어촌특별세를 체납하게 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일마다 ()%의 납부지연가산세(체납분)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6.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일자별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납부할 금액]

[illegible][illegible]

- ◎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7. 독촉장에 고지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8.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지방세정보통신망(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전자납부 이용방법

- ①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지방세납부 등] 선택(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07:00 ~ 23:30)

지방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 ◎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근 거 법 률

「지방세기정수법」 제32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세미출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립조합

안 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기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시·군·구
읍면동

납부최고서 검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입면동	과세번호	검
■ 제2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 등)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주 소										
■ 납세자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주 소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계

납부할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지 방 세

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

전자납부 번 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납부할 금액이 공리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적접 기재 ※ 이 영수증은 과세 증명서로 사용 할 수 하시기 바랍니다.
 수납용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직 인 수 납 인

안 내 말 씀

1. 2024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귀하께서 납부통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정법」 제3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알려드리며,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기정법」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귀하께서 납부통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정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된 금액을 알려드리며,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납부최고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4. 납부최고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농어촌특별세를 체납하게 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일마다 ()%의 납부지연가산세(체납분)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6.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일 자체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납부할 금액]

[illegible]

-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7. 납부최고서에 고지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금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8.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지방세정보통신망(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지방세납부 등] 선택(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07:00 ~ 23:30)

지방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
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바코드 13mm

음성반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mm

우편반송용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지방세 안내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소

시·군·구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호

세 목

납부할 세액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계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까지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수납용

소

시·군·구

체납액 고지서 검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주 소

납세자번호:

지 방 세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과세대상:

납부할 금액

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호

안 내 말 씀

1. 2024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귀하의 체납액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귀하의 체납액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고지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금고,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고지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4.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농어촌특별세를 체납하게 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월마다 ()%의 납부지연가산세(체납분)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5.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일자별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납부할 금액]

[illegible]

Ⓢ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6.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지방세정보통신망(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지방세납부 등] 선택(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07:00 ~ 23:30)

지방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